성주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

1. 발의자 : 백철현, 김영래, 이성재, 김명석, 배명호, 이수경, 이화숙 의원 공동발의

2. 제정이유

○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시설이 없는 성주군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함과 아울러 성주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함.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을 정함.(안 제3조)

-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

다.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을 정함.(안 제4조)

- 타 지역(전국) 화장장을 성주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%를 지급함.

라. 신청 및 지급방법을 정함.(안 제5조)

마. 화장장려금 지원제외 대상을 정함(안 제6조)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
-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-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
- 사태(死胎)·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제4조

나. 예산조치 : 관련 부서와 협의 예산반영

다. 기타사항

· 조례안예고 : 의견 없음(2013. 10. 16. ~ 2013. 10. 25)

5. 검토보고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묘지증가에 다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후, 화장 시 관내에 화장장이 없으므로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장이 설치된 주민보다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환경보존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서

○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